

공고제 138호

기안자	주원리	전화번호	321	공보	필요불필요
원지	계정	주원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제2부시장	시장
				전결	
발표자	방재계장	시장리과장		보존	년한
서명	윤대계				명구
기년월일	1961. 10. 29	시년월일	10. 29	공계관	정서기장
분류기호	432.4	7969			
결수참	유선조	내부결재	공고제 138호	발신	
제목	환지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공고				
내용	<p>1. 서울특별시 공고제 제 897호 (61. 8. 13)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를 발하고 관계 토지 소유자에게 종관을 공(공) 한바 있는 수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2차 구역의 별지 조서내용 토지등은 종관 기간중 관계 토지 소유자들의 시정요청이 있어 재조사 검토한바 지적공부 및 등기부 조사시에 착오 되었음이 확인케 되었음.</p> <p>2. 따라서 개인 개인 재산의 정당권 권익을 위하여, 시정함이 타당함으로 별지 변경조서 일드면과 같이 등지구의 일부 조서부분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코리함.</p>				

한소
127

127

2011

11-1

서울특별시

165

안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8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위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중 일부 지역이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31조 별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령하리 관
계 조서 및 도면은 광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상복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종합이 공한다

1961

서울특별시청 총 치 명

안 2

수 신	수신처	참 조	발 신	서울특별시청
제 목	환지 예정지 변경 지령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위토지구획 정리 사
업지구내에 있는 귀하소유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31조 별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지령서와 같이
환지 예정지를 변경 지령 하시기 등고 하오며

2 관계도면은 광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상복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어오나 양리 하시기
바랍니다.

유 권 1. 공고문 사본

2. 환지 예정지 변경 지령서 붙

수신처 : 각 토지소유자, 11-2

안 3.

수신 | 심복 구형장 | 발신 | 서울특별시

제목 | 수유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예정지 일부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 수유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환지 예정지를 별첨공문과 같이 변경 지령하고 관계도면을 송부 하니 관계인외 종란에 공할것이며 사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것 유천.

- 1. 환지 예정지 변경지령서
- 2. 환지 예정지 변경지령도
- 3. 공고문 2부

안 4

수신 | 공보 신장 | 발신 | 도시계획 국장

제목 | 환지 예정지 변경지령 공고.

수유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환지 예정지를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변경지령 공고 하얏아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 공고문 사본 2부

우종자 명단

번호	주 소	성 명	비 고
1	성북구 성북동 1가 120	김 석 남	
2	종로구 산림동 21	장 병 만	
3	용산구 용문동 40의10	고 재 림	
4	종로구 수하동 17	오 훈 근	
5	종로구 명륜동 3가 2의4	최 경 역	
6	종로구 권선동 67의8	김 보 승	
7	성북구 삼선동 216의9	이 창 호	
8	성북구 미아동 737	김 봉 인	
9	한국전력주식회사		
10	성북구 수유동 78	손 근 배	


이상 10명

복 명 서

1. 수유토지구획정리지구 제2차 공사구역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서울고시 제897호 (1964. 8. 13)로 고시하고 그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종잡에 공하였으나
2. 별지 도서 내용의 토지등은 환지설계상 필요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 조사시 오인 (誤認)으로 인하여 환지 예정지 지점에 있어 착오된것을 토지소유자가 공람기간중에 발견하고 시정을 요청함으로 관계 지번에 대하여 재 조사 검토한바 당초 조사 사항이 착오되었음이 확인하였으므로 개인 소유지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본지구 환지 계획에 의거 별첨 도서와 같이 환지 예정지를 일부 정정 조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이 이에 부당하나이다. 끝

1964. 11. 9. 28.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지방토지관리 이 수 련 

서울특별시청 기하

등기 및 지적 요인후 재확인한내역

지번	정	오	비	고
미아동 156외4	김석남	장병만	65. 9. 23.	등기부조사확인
미아동 808외4	133평	113평	65. 9. 23.	호지예장조사확인
미아동 산 148외 11	560평	810평	65. 9. 23.	"
기아동 22외 1	송근배	한국전외사	65. 9. 23.	등기부조사확인
미아동 산 148외 7	160㎡L	165㎡L	65. 9. 7.	5등지 요인후, 대리인여 귀속 양해를 구하였음 끝.

본 지 예 정 지 법 검 조 서

종 전 토 지				본 지 예 정 지				비 고
종	영	치	법	면	적	면	적	
종	영	치	법	면	적	면	적	
종	영	치	법	면	적	면	적	
彌阿洞	153	212	田	717				
	156	214	田	(12)	196	670	846 ⁸⁰	846 ⁸⁰
			계	729			846 ⁸⁰	846 ⁸⁰
彌阿洞	149	211	田	980				
	150		"	514	196	1,235 ⁸	1,457 ⁸	1,457 ⁸
			계	1,494			1,457 ⁸	1,457 ⁸
彌阿洞	808	213	田	411				
	808	214	"	(113)	133	375 ¹⁶	375 ¹⁶	390 ²⁰
			계	544			390 ²⁰	391 ²⁰
彌阿洞	山	148	212	林	1,230			
	山	9	213	"	30			
			계	1,260				
彌阿洞	山	144	212	林	150			
	山	147	211	"	840			
	山	147	212	"	90			
			계	1,080				
公園用地				150				

彌阿洞 156 214
所有權者
誤認改更

彌阿洞 808 214
被前土地面積
133 214 214
誤認改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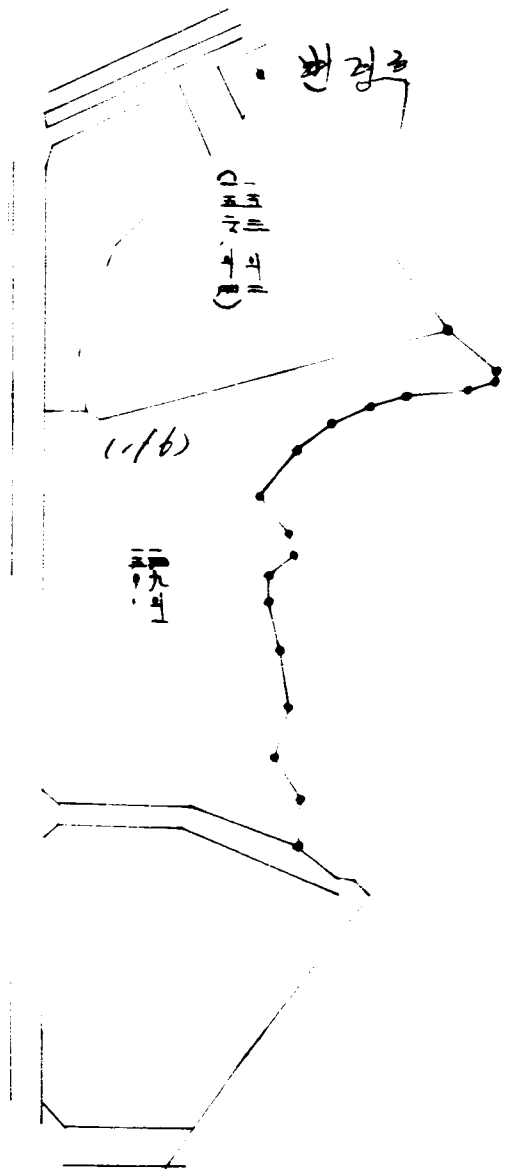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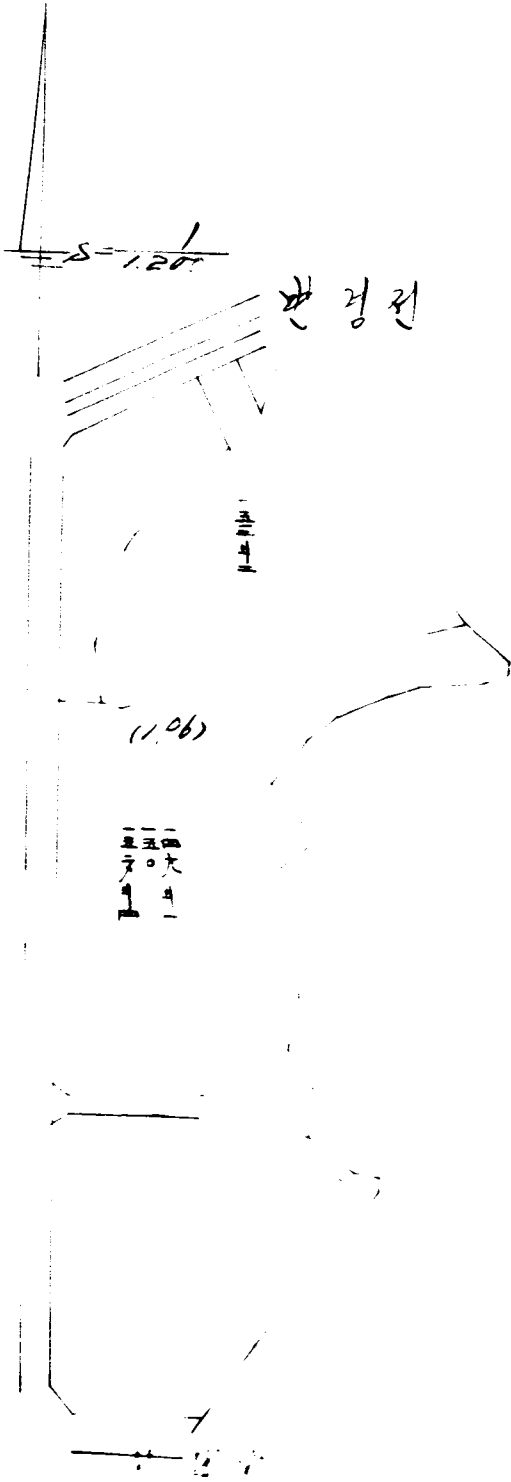
혼자예정지합결조서

종 전 후			혼자예정지											
종	명	지	법	면	적	변	경	전	번	변	경	후	비	고
		법	적	모	군리	촌사	후	군리	촌지	면적	면적			
				160	140	20	139	10	0	160	215	20	214	69
彌阿洞	16148	24	林	1260	165	1224	52	682	10	165	1109	2	606	35
				12			542	10	162				542	
				합	1362	72	1363	20		1362	87		1363	20
彌阿洞	山148	47	林	100	74	26	75	165	75	165	75	25	25	25
彌阿洞	山148	24	林	580	55	525	20	295	50	157	390	50	125	10
				160			199	20	160				199	
				합			586	70					396	50
彌阿洞	200	42	田	37										
"	239	41	"	34	131	50	50	50	131	39	60	58	50	
"	24	41	"	20					130	13	-	18	-	
			합	91										
替費地				130			18	-				0		
							0	157				17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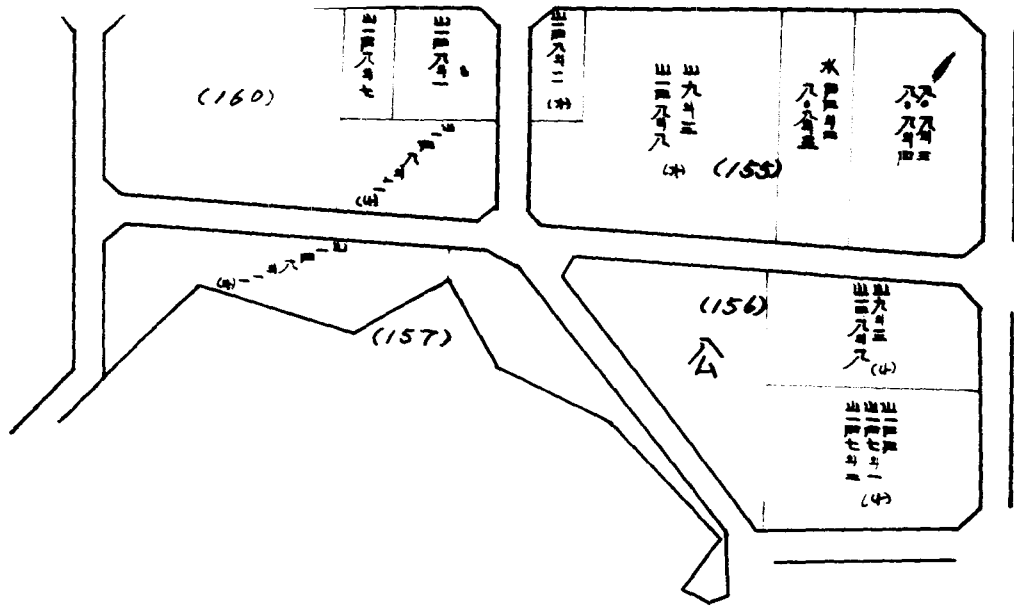
彌阿洞 24/41 林 所有權者誤換 20 變更

彌阿洞 24/41 林 所有權者誤換 20 變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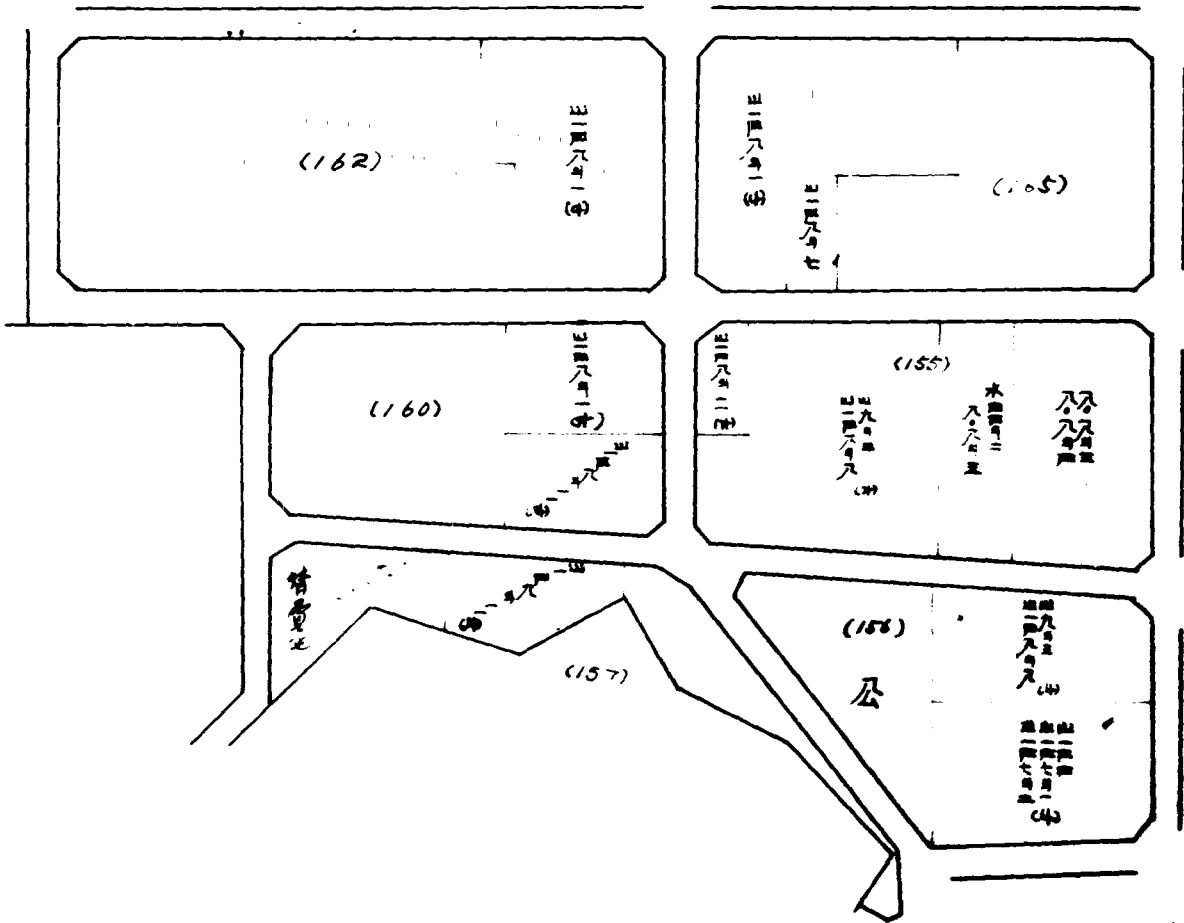
彌阿洞 24/41 田 所有權者誤換 20 變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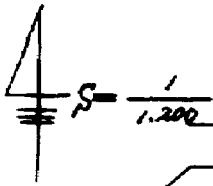


1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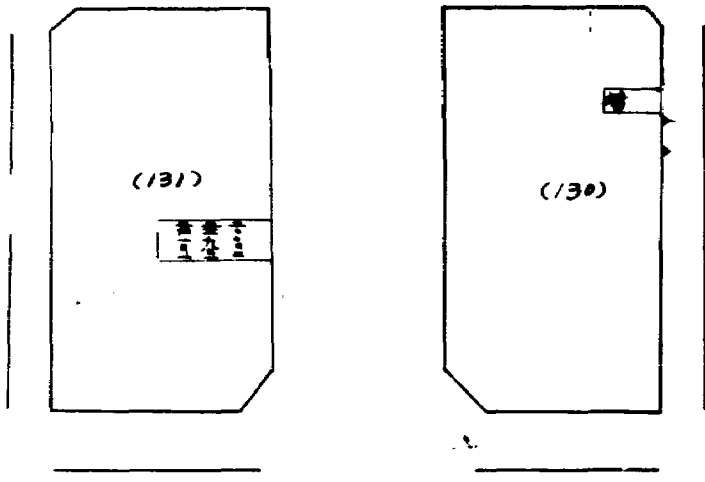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